

“성별분리통계”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.

I·SEOUL·U  
서울시의 서울인

# 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 
seoul.go.kr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[응답소 민원회신]건축법 관련 문의\_필로티 하부 공개공지 바닥면 적산입여부

1. 안녕하십니까?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우리시에 문의하신 필로티 하부 공개공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.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제1항 다호에 “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(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)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”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.

3. 문의하신 해당되는 부분이 위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대지 현황 및 건축물의 건축 계획 등에 따라 검토·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(담당 김성화/02-2133-7101)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

주무관	건축정책팀장	건축기획과장	04/17
협조자			
시행	건축기획과-8569	( )	접수 ( )
우	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	/	
전화	02-2133-7101 / 전송 02-2133-0750	/	비공개(6)